



제426회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신성범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911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총괄 검토의견	4
1. 전부개정 취지 및 필요성	4
2. 법체계와 주요내용	9
IV. 주요 조문별 검토의견	14
1. 제명	14
2. 목적(제1조)	15
3. 정의(제2조)	16
4. 위원회·실무위원회 기능(제3조, 제4조)	19
5.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제7조)	23
6. 피해신고처의 설치(제8조)	25
7. 보상금(제9조)	26
8. 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제10조, 제11조)	30

9. 조세면제(제18조)	33
10. 기탁금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제24조)	34
11. 추모사업 등(제25조)	35
12. 사실조사 및 협조 의무,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제23조, 제27조)	37
13. 벌칙(제28조)	38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신성범의원 등 24인
2. 제 안 일 : 2025. 4. 17.
3. 회 부 일 : 2025. 4.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6·25전쟁 기간 중인 1951년 2월 9일부터 같은 해 2월 11일까지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일원 및 1951년 2월 7일 산청군 금서면, 함양군 휴천면·유림면 등 일원에서 국군병력은 공비토벌을 이유로 무고한 양민을 희생시켰는바, 이를 각각 거창사건, 산청·함양사건(이하 “거창사건등”이라 함)이라 함.

1996년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 및 시행되었고, 1998년 국무총리 소속의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934명의 사망자와 1,517명의 유족을 결정한 바 있음.

현행법에 따라 추모공원이 운영되고 있으나, 희생된 분들과 그 유족들에 대한 보상금,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여 실질적인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

으로 제기되었음.

이에 거창사건등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및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을 위한 국가의 보상금 지급 규정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거창사건등의 발생 시기 및 장소를 구체화하고, 거창사건등과 관련하여 사망하였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을 관련자로 정의함(안 제2조).

나. 관련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과 그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두도록 함(안 제3조).

다.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지사 소속으로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함)를 두도록 함(안 제4조).

라. 국가는 관련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사건 발생 시기와 근접한 통계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관련자의 일실회익과 장기간의 보상지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지급함(안 제9조).

마. 국가는 거창사건 등 관련자 중에서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평상시 간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 의료지원
금을 지급함(안 제10조).

바. 국가는 관련자 또는 유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11
조).

Ⅲ. 총괄 검토의견

1. 전부개정 취지 및 필요성

거창사건등은 6·25전쟁 시 지리산 일대 공비토벌작전 수행 중 1951년 2월 7일부터 2월 11일까지 국군에 의해 경남 거창군 및 산청·함양군 지역의 주민이 집단 희생된 사건으로 알려져 있음.

사건 이후 국회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위한 특위가 구성되어 현지조사를 벌였으며, 희생자들의 명예회복 및 배상을 위한 시도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음.

가시적으로 1989년 「거창양민학살사건명예회복및배상에관한특별조치법」 제정안이 제13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 이후 배상관련 부분을 제외한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이후 거창사건법)이 1996년 제정되어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과 위령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¹⁾

《 거창사건법 제정 경과 》

- '51.3.29. 거창지역 신중목 국회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사건 폭로
- '51.3.30. 국회에서 합동조사단을 구성 현지 확인
 - '51.4.7. 군인이 공비로 위장 국회조사단에 사격, 현장 접근 방해
- '51.12.16. 대구중앙고등군법회의에서 관련자 3명 유죄 판결

1) 한인섭, “거창사건 피해자를 위한 배상입법: 그 당위와 내용”, 2004. pp.138~139.

- '60.5.31.~6.10. 국회 진상조사특위 구성 현지조사
- '93.11.11. 이강두 의원 외 20인, 거창사건관련자 특별조치법 발의
- '96.1.5.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 제정
- '96.4.6.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정

* 행정안전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가공

이후 1998년 특별조치법에 따라 구성된 국무총리 소속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총 934명의 사망자와 1,517명의 유족을 결정하였음.

《 거창사건 등 사망자 및 유족 결정 내역 》

구분	총계		사망자		유족	
	접수	결정	접수	결정	접수	결정
거창지역	1,520명	1,333명	557명	548명	963명	785명
산청·함양지역	2,052명	1,118명	399명	386명	1,653명	732명
합계	3,572명	2,451명	956명	934명	2,616명	1,517명

* 행정안전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가공

그러나, 희생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2004년 3월 2일 거창사건 관련자에 대한 보상을 규정한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나 정부의 재의요구에 의해 국회로 반송되었고,²⁾ 제16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되었음.

이후로도 여러 차례 배·보상 관련 입법 시도가 있었으나 현재까지

2)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법률안재의요구안」, 2004. 3, 정부

관련 법의 제·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거창사건 관련자 등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및 지원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제21대 국회 이후 배·보상 관련 입법 시도 내역 》

법안명	대표발의자	회부일자	주요내용
「거창사건등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김병욱 의원	2020.10.5. (법사위)	거창사건 및 이와 유사한 산청·함양 사건의 관련자 및 그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금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 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김태호 의원	2020.12.23. (법사위)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한 국가 배상을 규정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김병욱 의원	2021.10.28. (행안위)	거창사건등과 관련하여 사망 또는 행방불명되었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및 유족에 대한 보상금·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 규정
「거창사건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소병철 의원	2021.11.25. (법사위)	거창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과 유족에 대한 국가의 배상금 지급 규정 마련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등을 참고하여 재작성

한편, 거창사건 피해자 일부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2008년 대법원은 이들의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시하였으나,³⁾ 2018년 헌법재판소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법」(이하 과거사정리법) 제2조제1항제3호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은 그 유족들이 사건 이후 국가로부터 희생자들에 관한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었던 경우가 많은바, 이런 사안에 대해 사건이 있던 날부터 기산되는 소멸시효(객관적 소멸시효)를 적용한 것은 청구인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하였음.⁴⁾

3) 대법원 2008.5.29.선고 2004다33469판결

4) 헌법재판소 2018.8.30. 2014헌바148등(2014헌바148, 2014헌바162, 2014헌바219, 2014헌바223, 2014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2022년 대법원도 이 사건이 과거사정리법 제2조제1항제3호의 한국전쟁 전후 시기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 해당하므로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음.⁵⁾

동 전부개정안은 이와 같은 배·보상 관련 입법 시도와 판례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제안된 것으로, 국군에 의하여 희생당한 거창사건등 관련 사망자 이외에 행방불명자와 상이자를 추가하여 ‘관련자’로 정의하고 이들에게 보상금 지급 등 실질적인 보상을 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이들의 명예회복과 생활안정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임.

다만, 전부개정안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시 상당한 규모의 국가재정(약 1,30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으므로,⁶⁾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봄.

또한 보상과 관련하여 통일된 원칙과 기준 마련을 위해 개별 입법보다 과거사정리법을 통한 배·보상 등 포괄적 입법논의가 보다 바람직

헌바290, 2014헌바466, 2015헌바50, 2015헌바440, 2016헌바419)

5) “거창사건법에 의하여 사망자 및 유족결정이 이루어진 피해자에 대하여 정리위원회에 의한 진실규명 결정이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거창사건은 시기와 내용 및 성격상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 해당한다.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로서 이 사건 위헌결정의 효력에 의하여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구 회계법 제32조에 따른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정한 주관적 기산점과 이를 기초로 한 단기소멸시효만이 적용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2022.11.30. 선고 2019다216879판결

6) 동 전부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는 제출되지 않았으며, 행정안전부는 개정안 1인당 보상금액 한도 1억 4,000만원에 확인된 희생자 수 934명을 곱하여 최대 약 1,30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음.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 바,⁷⁾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도 있을 것임.

개정안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보상 필요성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적 공감대와 보상규모의 예측가능성, 국가재정여건 등 재정부담을 함께 고려하여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행정안전부도 보상금 지급 여부 등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재정당국과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보상과 관련한 통일적 원칙과 기준을 위해 개별 입법보다는 포괄적 입법이 바람직하고, 현재 과거사 전반의 배·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다수의 「과거사정리법」 개정안이 국회 행안위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입법 추이를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7) 제22대 국회 들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과거사정리법 개정안 내역은 아래와 같음.

구분	대표발의자	회부일자	주요내용
일부개정안	이상휘 의원	2024.8.13.	국무총리 소속의 진실규명사건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 설치 및 보상·절차 규정
	이개호 의원	2024.12.19.	피해에 대한 배·보상 규정 및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배제 조항 신설
	이해식 의원	2025.1.16.	정부의 조치의무를 명예회복에서 피해보상까지로 확대하여 규정
전부개정안	용혜인 의원	2025.4.25.	진실규명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명예회복, 재발방지, 국민 화해와 통합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배제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등을 참고하여 재작성

2. 법체계와 주요 내용

현행법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합동묘역관리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총 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거창사건 등의 관련자를 사망자뿐만 아니라 행방불명자와 상이자에게까지 확대하고, 관련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한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는 등 총 28개 조문으로 개편하여 구성하고 있음.

《 현행법과 개정안의 조문체계 비교 》

구분(개정안 기준)		현행법	전부개정안
제명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u>명예회복과 보상 등에</u> 관한 특별법
목적 (안 제1조)		- 거창사건등과 관련하여 - 사망한 사람과 그 유족들의 명예 회복 -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	- 거창사건등과 관련하여 - 사망하였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u>실질적인 보상</u> - <u>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u>하고,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
정의 (안 제2조)	제1호 (거창사건 등)	공비토벌을 이유로 국군병력의 작전 수행 중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	1951년 2월 9일부터 같은 해 2월 11일 까지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일원 및 1951년 2월 7일 산청군 금서면, 함양군 휴천면·유림면 등 일원에서 공비토벌을 이유로 국군병력이 무고한 양민을 희생 시킨 사건
	제2호 (관련자)	< 신 설 > ※ 기존 : 사망자	거창사건등과 관련하여 <u>사망하였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u>으로서 거창사건등의 <u>관련자로</u> 결정된 사람
	제3호 (유족)	- 거창사건등에 의하여 <u>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u> - 다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u>사망자의 형제자매</u>	<u>관련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u>와 직계존비속 - 다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u>관련자의 형제자매</u>
명예회복	제1항 (목적, 명칭, 소속)	<u>사망자</u> 및 그 유족의 결정과 <u>명예회복에</u>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회위원회	<u>관련자</u> 및 유족 결정, <u>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u>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위원회

구분(개정안 기준)		현행법	전부개정안
심 의 위 원 회 (안 제 3 조)	제2항 (기능 : 심의·의결)	- 사망자 및 유족 결정 - 사망자 및 유족 명예회복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묘지 단장, 위령제례 및 위령탑 건립	- 관련자 및 유족 결정 - 관련자 및 유족 명예회복 - 관련자 중 상이자의 장애등급 판정 - 관련자 및 유족의 보상금 등 결정 및 지급 - 관련자 및 유족의 보상 등에 대한 재원대책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 관련자 추모사업 또는 추모단체 지원
	제5항 (임기)	< 신 설 >	• <u>위원의 임기 2년, 한차례 연임 가능</u>
	제6항 (조직)	< 신 설 >	• <u>분과위원회 설치 가능</u>
실 무 위 원 회 (안 제 4 조)	제1항 (목적, 명칭, 소속)	-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 - 해당 시·도지사 소속	<u>위원회의 의결사항 실행</u>하고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 <u>경상남도지사 소속</u>
	제2항 (기능 : 처리)	< 신 설 >	<u>관련자와 유족 피해신고 접수 및 조사</u> <u>보상금등 신청접수 와 집행 등</u> <u>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신청 접수와 조사 등</u> <u>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u>
	제4항 (구성)	- 위원장은 해당 시·도지사(현행 ③) - 위원은 4명 이상의 유족대표를 포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거나 임명	- 위원장은 <u>경상남도지사</u> - 위원은 4명 이상의 유족대표를 포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u>관계 공무원</u>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거나 임명
	제5항 (위원)	< 신 설 >	• <u>위원의 임기 2년, 연임 가능</u>
	제6항 (조직)	< 신 설 >	• <u>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조례로 정함</u>
가족관계 등록부 작성 (안 제7조 제1항)		당시 호적부가 소실되어 가족관계 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 작성할 수 있음	당시 <u>호적부의 손실로</u>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u>가족관계 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 및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기록을 정정 할 수 있음</u>
피해신고 및 신고처 설치 (안 제8조)		< 신 설 >	• <u>위원회는 관련자 및 유족의 피해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신고처를 설치하고 공고하여야 함</u>
보상금 (안 제9조)		< 신 설 >	- 관련자로 결정된 사람에 보상금 지급 -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사람의 유족 : <u>1억4천만원 초과 하지 않는 범위에서</u>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구분(개정안 기준)	현행법	전부개정안
		▶ 상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 : 1억4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장해등급 및 노동력 상실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 보상금 금액 산정 및 지급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의료지원금 (안 제10조)	< 신 설 >	• 관련자 중에서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평상시 간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와 간호 및 보조장구 구입에 실제 드는 비용을 한꺼번에 지급함
생활지원금 (안 제11조)	< 신 설 >	• 관련자 또는 유족에 대하여 그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 관련자 또는 유족의 지원을 위하여 기탁 받은 성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조세면제 (안 제18조)	< 신 설 >	• 국세와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기탁금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 (안 제24조)	< 신 설 >	• 위원회는 「기부금품법」제5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음
추모사업 등 (안 제25조)	• 정부는 유족의 합동묘역관리사업이 추진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 지원 가능(현행 §8)	• 국가와 지자체는 추모사업을 추진해야 함 •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추모시설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필요한 사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벌칙 (안 제28조)	< 신 설 >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보상금 수령 등 - 위원 또는 직원 폭행, 협박, 위계로써 직무집행 방해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영리목적으로 단체 조직하거나 단체 또는 개인활동을 한 사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업무상 알게된 비밀 누설
부칙	•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경과조치(중전의 결정,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

구체적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제명을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함.

안 제1조에서 이 법의 목적에 거창사건등의 관련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함께 실질적인 보상 지급을 추가로 규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사건의 발생시기와 장소를 구체화하는 한편, 관련자의 정의를 사망자뿐만 아니라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까지 확대하며,

안 제3조~안 제4조에서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관련자의 장애등급판정, 관련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 등의 부분을 추가로 규정함.

안 제7조에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과 함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부분에 대한 정정을 추가하고,

안 제8조에서는 관련자 및 유족의 피해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신고처 설치 의무를 규정함.

안 제9조에서 거창사건등의 관련자로 결정된 자에 대한 보상금을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0조~안 제11조에서는 관련자 중 계속 치료·간호 또는 보조장구가 필요한 자에 대한 의료지원금과, 관련자 또는 유족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 등에 대해 국세와 지방세를 면제하려는 규정을 신설하였음.

안 제25조에서는 거창사건등의 관련자에 대한 추모사업 추진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3조 및 안 제27조에서는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조사권 및 자료제출 요구권을 규정하는 한편, 개인정보가 포함된 제공 자료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하도록 규정하였음.

이하에서는 각 사안별로 주요 내용에 대해 검토하겠음.

IV. 주요 조문별 검토의견

1. 제명

현 행	개 정 안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동 법의 제명을 현행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있음.

현행 제명의 ‘특별조치법’이라는 표현은 1989년 「거창사건관련자의 명예회복및배상에관한특별조치법안」⁸⁾⁹⁾으로 최초 입법이 시도될 당시부터 이어져 온 것으로 보이는바,

개정안은 이를 ‘특별법’으로 수정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보상을 제명에 명시하려는 것임.

제주4·3사건 및 여수순천 사건 관련 법안이 모두 ‘특별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¹⁰⁾ 동 법률안을 이와 동일하게 특별법의 형태로 변경하는 것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임.

다만, 보상 부분을 제명에 포함하는 것에 대하여는 보상금 관련

8) 「거창사건관련자의명예회복및배상에관한특별조치법안」(의안번호 130620, 김동영의원등 3인 외 162인)

9) 특별조치법이란 특별법 사안에 특별한 조치가 수반될 때 이를 규율하기 위한 법률 형태임.

10)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내용을 담고 있는 제주4·3사건 특별법도 이를 제명에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후술할 보상금 지급규정의 타당성 여부 판단과 함께 종합적으로 논의해볼 필요가 있을 것임.

2. 목적(제1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거창사건등과 관련하여 <u>사망한 사람과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u>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거창사건등과 관련하여 <u>사망하였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u> ,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법은 이 법의 목적을 거창사건등과 관련된 사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통해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사망자 외에 상이를 입은 사람을 추가하고,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도 함께 규정하려는 것임.

거창사건등과 관련하여 사망하였거나 상이를 입은 자, 그 유족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국가폭력으로 인한 희생을 보상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개정안은 정의 규정에서 관련자를 사망자, 행방불명자,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목적 규정에서는 행방불명자가 배제되어 있으므로 이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또한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998년 거창사건등에 대한 사망자와 유족 결정 이후 행방불명자와 상이자의 규모를 확인할만한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관련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개정실익을 검토하는 절차가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임.

3. 정의(제2조)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창사건등”이란 공비토벌을 이유로 <u>국군병력의 작전수행 중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u>을 말한다. <u><신 설></u> 2. “유족”이란 <u>거창사건등에 의하여 사망한 사람(이하 “사망자”라 한다)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u>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자의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창사건등”이란 <u>1951년 2월 9일부터 같은 해 2월 11일까지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일원 및 1951년 2월 7일 산청군 금서면, 함양군 휴천면·유림면 등 일원에서 공비토벌을 이유로 국군병력이 무고한 양민을 희생시킨 사건</u>을 말한다. 2. “관련자”란 거창사건등과 관련하여 사망하였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거창사건등의 관련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3. “유족”이란 <u>관련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직계존비속</u>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자의 형제자매를 말한다.

현행법은 ‘거창사건등’의 정의를 “공비토벌을 이유로 국군병력의 작전수행 중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

은 이를 “1951년 2월 9일부터 같은 해 2월 11일까지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일원 및 1951년 2월 7일 산청군 금서면, 함양군 휴천면·유림면 등 일원에서 공비토벌을 이유로 국군병력이 무고한 양민을 희생시킨 사건”으로 규정하여 그 의미를 구체화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이 사망자의 유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개정안은 사망자와 행방불명된 자, 상이를 입은 자를 모두 ‘관련자’로, 유족의 정의 또한 관련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거창사건등의 정의를 구체화하는 것은 향후 보상금 등의 지급에 있어 투입될 재정을 최소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고, 유사 과거사 법률에서도 사건의 발생시기 및 장소 등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 유사 입법례의 사건 정의 규정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주43사건"이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수·순천 10·19사건"이란 정부 수립의 초기 단계에 여수에서 중단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인하여, 1948년 10월 19일부터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된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순천지역을 비롯하여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 및 이의 진압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 관련 법률 규정을 참고하여 작성

다만, 현행법의 ‘거창사건등’에 대한 정의가 입법 당시 사회적 합의
의를 반영한 것임을 고려할 때, 이를 변경함에 있어서는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의 절차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
성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임.

행방불명자와 상이를 입은 자를 관련자에 포함시키는 것은 제주4·3
사건, 여수순천 사건 등 거창사건등과 유사한 성격의 한국전쟁 시기의
과거사 관련 법률들의 규정을 고려할 때 타당성이 있다고 보임.¹¹⁾

다만, 전술한 것처럼 관련자료의 부족으로 행방불명자와 상이자를
관련자에 포함하는 것의 개정실익 검토를 위한 사전조사가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임.

아울러, 한국전쟁 전후 과거사 개별 입법례가 ‘관련자’가 아닌
‘희생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용어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임.

11)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희생자"란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은 사람 또는 수형
인(受刑人)으로서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
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희생자"란 여수·순천 10·19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사
람, 수형자(受刑者)로서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 목적 조문 ‘희생자’ 용어 사용 유사 입법례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 및 <u>희생자</u> 에 대한 보상을 함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수·순천 10·19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u>희생자</u> 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노근리사건의 <u>희생자</u> 및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법률 규정을 참고하여 작성

개정안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사건발생시기와 장소를 구체화하고, 유족 범위에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하여 이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거창사건등’의 정의는 입법 당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규정된 것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공청회 등을 거쳐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4. 위원회 · 실무위원회 기능(제3조, 제4조)

현 행	개 정 안
제3조(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① 이 법에 따른 사망자 및 그 유족의 결정과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u>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u>	제3조(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① 이 법에 따라 <u>관련자</u> 및 유족을 결정하고, 그들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u>거창사건등관련</u>

<u>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 ② (생략) 1. <u>사망자</u> 및 유족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u>사망자</u> 및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3. <u>묘지 단장, 위령제례(慰靈祭禮) 및 위령탑 건립에 관한 사항</u> <u><신 설></u> ③ (생략)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u>위원은 5명 이상의 유족 대표를 포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u> <u><신 설></u> <u><신 설></u> ⑤ <u>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 ② (현행과 같음) 1. <u>관련자</u> 및 유족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u>관련자</u> 및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3. <u>관련자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의 장애등급 판정에 관한 사항</u> 4. <u>관련자 및 유족의 보상금 등의 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u> 5. <u>관련자 및 유족의 보상 등에 대한 재원대책에 관한 사항</u> 6. <u>제7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사항</u> 7. <u>관련자 추모사업 또는 추모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u> 8. <u>그 밖에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u>위원은 유족대표 5인 이내,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관계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u> ⑤ <u>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u> ⑥ <u>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u> ⑦ <u>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

제4조(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① <u>위원회에서</u>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u>해당 시·도지사</u> 소속으로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u><신 설></u> ② (생략) ③ 위원장은 <u>해당 시·도지사</u>가 되고 위원은 4명 이상의 유족 대표를 포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u><신 설></u> <u><신 설></u>	제4조(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① <u>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u>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u>경상남도지사</u> 소속으로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u>관련자와 유족의 피해신고 접수 및 조사에 관한 사항</u> 2. <u>보상금등의 신청접수와 집행 등에 관한 사항</u> 3. <u>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 신청접수와 조사 등에 관한 사항</u> 4. <u>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u>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위원장은 <u>경상남도지사</u>가 되고 위원은 4명 이상의 유족 대표를 포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u>관계 공무원</u>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⑤ <u>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u> ⑥ <u>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u>
--	---

현행법은 사망자 및 그 유족의 결정과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지사 소속으로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실무위

원회(이하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으나,

개정안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관련자의 장애등급판정, 관련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금 등의 결정, 재원대책사항 등을 추가로 규정하고,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실무위원회의 처리 사항으로 피해신고 접수, 보상금 집행 등을 명시하는 한편, 실무위원회를 경상남도지사 소속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보상금 등 결정·지급, 상이자 장애판정 등을 위해 위원회 기능과 분과위원회 등 조직·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실무위원회의 업무를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유사 과거사 입법례의 규정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측면이 있음.

다만, 전술한 행방불명자와 상이자 포함의 개정실익 논의와 후술할 보상금 지급 관련 규정의 적절성 논의를 함께 고려하여 해당 조문의 타당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임.

한편, 안 제3조 조문명(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과 개정을 통해 변경하려는 위원회의 명칭(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위원회)이 불일치하므로, 이를 통일시킬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제주4·3사건, 여수순천 사건 등 관련 법들이 ‘명예회복위원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동 개정안의 경우도 조문명을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위원회’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임.

《 위원회 규정 관련 유사 입법례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①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을 심사·결정하며, 그들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①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 및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관련 법률 규정을 참고하여 작성

또한 실무위원회를 경상남도지사 소속으로 규정하려는 것에 대하여는 유사 입법례가 실무위원회 소속을 사건이 일어난 지역의 시·도지사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¹²⁾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임.

5.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제7조)

현 행	개 정 안
제6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거창사건 등 당시 <u>호적부가 소실되어</u>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u>아니한</u> 사람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u>규정에 따라</u>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	제7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① 거창사건 등 당시 <u>호적부의 손실로</u>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u>아니하거나</u>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u>결정 및 대법원규칙</u>

12)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④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유족 대표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④ 위원장은 전라남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유족 대표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하생략)

<신 설>	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기록을 정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 범위, 신청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현행법은 호적부의 소실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은 자는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이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에 가족관계등록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이를 위원회의 결정 및 대법원규칙에 따라 정정할 수 있도록 추가로 규정하려는 것임.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정정 관련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여 미비된 요건과 절차를 보완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관련 유사 입법례 등을 통해 볼 때, 그 요건을 호적부의 손실로 한정하기보다 해당 사건의 ‘피해로 인하여’ 작성 및 정정이 필요한 경우로 더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관련 유사 입법례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2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 ① 제주4·3사건 <u>피해로 인하여</u>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기록을 정정할 수 있다.
---------------------------------	---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2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여수·순천 10·19사건 <u>피해로 인하여</u>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신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이 있으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을 할 수 있다.
---	--

* 관련 법률 규정을 참고하여 작성

6. 피해신고처의 설치(제8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u>제8조(피해신고 및 신고처의 설치) ① 위</u> <u>원회는 거창사건등의 관련자 및 유족</u> <u>의 피해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신고처</u> <u>를 설치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u> <u>② 위원회가 피해신고를 접수하는 때에</u> <u>는 신고 후 절차에 관한 사항과 관련자</u> <u>및 유족의 권리 등에 대하여 충실히 고</u> <u>지하여야 한다.</u> <u>③ 피해신고와 신고처의 설치 등에 필</u> <u>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개정안은 거창사건 등의 관련자 및 유족의 피해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신고처를 설치하도록 의무를 규정하여 관련자들의 피해신고 시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으로 보임.

제주4·3 사건 등 유사사건 입법례도 이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¹³⁾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임.

13)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9조(피해신고 및 신고처의 설치)

7. 보상금(제9조)

현행	개정안
<u><신설></u>	제9조(보상금) ① 국가는 관련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사건 발생 시기와 근접한 통계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관련자의 일실회익과 장기간의 보상지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1.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사람의 유족에 대하여는 1억4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2. 상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1억4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다만, 제1호의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상이를 입은 관련자로 결정된 사람이 그 상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가 살아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다. ③ 그 밖에 보상금의 금액 산정 및 지급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위원회는 국내 및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제주4·3사건과 관련한 희생자 및 유족의 피해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신고처를 설치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6조(신고처 설치 및 공고) ①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5조에 따른 진상규명 신고를 받기 위한 신고처를 설치하고,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신고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안은 위원회로 하여금 거창사건등의 관련자로 결정된 자에 대해 일실회익과 보상지연, 위자료 등을 고려한 보상금을 결정,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거창사건등의 관련자와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또한 국가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인 5·18민주화운동, 부마민주항쟁, 삼청교육대 사건, 제주 4·3사건 등의 경우 별도의 규정을 통해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명시하고 있으나, 거창사건등의 경우 이 같은 규정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타 법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지급의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국가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별 보상금 등 법률상 근거 여부 》

구분	보상금(일실회익)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5·18	○	○	○
부마항쟁	○	○	○
삼청교육	○	○	×
제주4·3	○	○	○
여순사건	×	○	○
노근리	×	○	×
거창사건 ¹⁴⁾	×	×	×

* 관련 법률 규정을 참고하여 작성

14) 현행법 기준

다만, 보상금 지급 규정은 시행 시 상당한 규모의 국가재정(약 1,307억원)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므로¹⁵⁾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봄.

또한 개정안은 보상금 한도액을 1억 4,0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한도액을 9,000만원으로 정하고 있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규정¹⁶⁾¹⁷⁾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한편, 향후 보상 요구 가능성이 있는 한국전쟁 전·후 발생한 유사 사건 규모와 재정 소요 등을 감안할 때, 보상에 있어 원칙과 기준을 통일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개별 입법보다는 포괄적 입법을 통한 해결이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있음.

15) 동 전부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는 제출되지 않았으며, 행정안전부는 개정안 1인당 보상금액 한도 1억 4,000만원에 확인된 희생자 수 934명을 곱하여 최대 약 1,30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음.

16)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6조(보상금) ① 국가는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사건 발생 시기와 근접한 통계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희생자의 일일이익과 장기간의 보상 지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1. 사망 또는 행방불명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9천만원

2. 후유장애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9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3. 수형인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다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수형 중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을 지급한다.

가. 수형 또는 구금 사실이 있는 경우: 지급 결정 연도 형사보상 1일 최고액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에 수형 또는 구금 일수를 곱한 금액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다만, 제1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17) 해당 금액은 2021년 2월부터 10월까지 한국법제연구원이 주관하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협조로 이루어진 ‘과거사 배·보상 기준 제도화에 관한 연구(4·3특별법을 중심으로)’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된 것임. 헤드라인제주, “제주4.3 희생자 보상금 1인당 ‘9000만원’...유족상속 ‘5촌’ 예외적 인정”, 2021.10.27.

이와 관련하여 과거사 전반에 대한 배·보상을 규정하는 내용의
과거사정리법 제·개정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이의
입법추이를 함께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제22대 국회 배·보상 규정 과거사정리법 제·개정안 내역 》

구분	대표발의자	회부일자	주요내용
일부개정안	이상휘 의원	2024.8.13.	국무총리 소속의 진실규명사건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 설치 및 보상·절차 규정
	이개호 의원	2024.12.20.	피해에 대한 배·보상 규정 및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 구권 소멸시효 배제 조항 신설
	이해식 의원	2025.1.16.	정부의 조치의무를 명예회복에서 피해보상까지로 확대 하여 규정
전부개정안	용혜인 의원	2025.4.25.	진실규명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명예회복, 재 발방지, 국민 화해와 통합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 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배제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등을 참고하여 재작성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보상금 지급 대상이 유족까지 확대되는 것
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바, 기존 유사 입법례와 같이 지급 대상
을 관련자로 한정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보상금 지급대상 관련 유사 입법례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6조(보상금) ① 국가는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사건 발생 시기와 근접한 통계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희생자의 일실회의와 장기간의 보상 지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1. 사망 또는 행방불명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9천만원 2. 후유장애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9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3. 수형인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다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수형 중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을 지급한다.
-----------------------------------	--

	가. 수형 또는 구금 사실이 있는 경우: 지급 결정 연도 형사보상 1일 최고액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에 수형 또는 구금 일수를 곱한 금액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다만, 제1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	---

* 관련 법률 규정을 참고하여 작성

개정안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명확한 진실규명을 통해 사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보상 필요성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적 공감대와 보상규모의 예측가능성, 국가재정여건 등 재정 부담을 함께 고려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8. 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제10조, 제11조)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0조(의료지원금) ① 국가는 거창사건 등 관련자 중에서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평상시 간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와 간호 및 보조장구 구입에 실제 드는 비용을 한꺼번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는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單割引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 ③ 의료지원금의 지급범위와 금액 산정 및 지급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신 설></u>	제11조(생활지원금) ① 국가는 관련자 또는 유족에 대하여 그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지원금은 관련자 또는 유족의 지원을 위하여 기탁 받은 성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생활지원금의 지급범위와 금액 산정 및 지급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개정안은 위원회로 하여금 거창사건등의 관련자 중 계속 치료·간호 또는 보조장구가 필요한 자에 대한 의료지원금과, 관련자 또는 유족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관련자 등에 대한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은 5·18민주화운동, 부마항쟁, 제주4·3사건, 여순사건 등과의 형평성을 감안할 때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다만,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지원금은 관련자에게만 적용되는 반면, 생활지원금은 관련자와 유족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한국전쟁 전후 유사 과거사 입법례의 경우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대상이 모두 희생자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유사 입법례의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 》

구분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희생자	희생자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희생자	희생자

* 관련 법률 규정을 참고하여 작성

한편, 법률이 아닌 조례로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존재하며, 거창사건등의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급도 조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 유사 입법례의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 》

구분	조례명	지급내역
제주43사건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생존희생자 월 70만원 유족 월 10만원 희생자 배우자 월 30만원
여순사건	「전라남도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유족 월 10만원
노근리사건	「노근리사건 생존희생자 등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생존희생자 또는 유족 월 10만원
거창사건	「거창사건/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유족에게 희생자 수에 따라 월 10만원

* 행정안전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가공

개정안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보상금의 경우와 동일하게 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지원 규모, 국가재정여건 등을 함께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며,

행정안전부는 유사 입법례와의 형평성을 감안할 때 생활지원금을 법령으로 규정하여 유족에게까지 지급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9. 조세면제(제18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8조(조세 면제)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에 대하여는 국세와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안은 이 법에 따른 보상금 등에 대해 국세와 지방세를 면제하려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거창사건등 관련자와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등에 대한 조세면제를 통해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으며, 유사 과거사 입법례에도 해당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¹⁸⁾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다만, 조세면제 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지정한 법률 등에 따르지 않고는 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바,¹⁹⁾ 이를 개별법률에 규정하더라도 실제 조세면제가 이루어지려면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개정해야 하므로 해당 조문의 개정 실익은 없음.

18)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5(조세 면제)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에 대하여는 국세와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9)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1. 「소득세법」 (이하 생략)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지방세 특례의 제한) ①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이하생략)

개정안에 대해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는 개별법에서 조세면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통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10. 기탁금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제24조)

현행	개정안
<신설>	제24조(기탁금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 ① 위원회는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탁금품의 접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은 위원회에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 내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기탁금품의 모집을 통해 안 제11조의 생활지원금 재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고, 유사 입법례 또한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임.

《 기탁금품 접수 특례 관련 유사 입법례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8조(기탁금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 ④ 제25조에 따른 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	--

* 관련 법률 규정을 참고하여 작성

다만, 기탁금품 기부행위가 공권력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기부심사 위원회 구성, 접수결과 공개 등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임.

11. 추모사업 등(제25조)

현 행	개 정 안
제8조(재정지원 등) 정부는 유족의 합동 묘역관리사업이 추진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u><신 설></u>	제25조(추모사업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거창사건등의 관련자를 추모하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추모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추모를 위한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사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거창사건등 관련자에 대한 추모사업 추진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거창사건등 관련자에 대한 추모사업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이와 관련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보다 강하게 규정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나,

현행법에 따라 현재 거창군과 산청군이 위령행사·추모공원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 추모사업을 의무화하거나 관련 비용을 전부 지원한 유사 입법례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추모사업 관련 유사 입법례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4조(기념사업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의 영령을 위로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u>예산의 범위에서 지원</u> 할 수 있다. (이하생략)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위령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를 위령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며 위령제례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u>예산의 범위에서 지원</u> 할 수 있다. (이하생략)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4조(노근리사건 관련 법인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등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법인의 위령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u>예산의 범위에서 지원</u> 할 수 있다.

* 관련 법률 규정을 참고하여 작성

12. 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제23조, 제27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3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①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관련자 및 유족의 결정, 보상금등의 지급,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 등

	을 위하여 관련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증 또는 필요한 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주민등록자료, 가족관계등록자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u><신 설></u>	제27조(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①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관련자 및 유족의 결정, 제7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관한 사항 또는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에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처리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개정안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이 법에 따른 관련자등의 결정,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을 위한 조사권 및 개인정보 관련 자료 등

의 제출요구권을 명시하고, 그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의 자료제출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포함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하도록 규정하여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으로 보임.

다만, 안 제23조제1항의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라는 표현이 다소 포괄적인 용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검증 또는 조사에 필요한 자료’ 등으로 보다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임.

13. 벌칙(제28조)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2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거나 보상금을 받게 한 사람 2.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 ② 제26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활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

개정안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자나 위원회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벌칙 규정을 통해 보상금 부정 수급 등을 방지하려는 입법취지와, 유사 입법례의 관련 규정 등을 고려할 때 구성요건 및 벌칙수준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임.

《 벌칙 관련 유사 입법례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3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받거나 보상금등을 받게 한 사람 2.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원회·실무위원회의 위원, 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 ② 제29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활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

* 관련 법률 규정을 참고하여 작성

문 의 처
02)6788-5343

□ 사건 개요

- 6·25전쟁 시 지리산 일대 공비토벌작전 수행 중 국군에 의해 '51.2.9~2.11 경남 거창군 및 산청·함양군 지역에서 주민이 집단 희생된 사건

□ 법 제정 경과

- '51.3.29. 거창지역 신중목 국회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사건 폭로
- '51.3.30. 국회에서 합동조사단을 구성 현지 확인
 - '51.4.7. 군인이 공비로 위장 국회조사단에 사격, 현장 접근 방해
- '51.12.16. 대구중앙고등군법회의에서 관련자 3명 유죄 판결
- '60.5.31~6.10. 국회 진상조사특위 구성 현지조사
- '93.11.11. 이강두 의원 외 20인, 거창사건관련자 특별조치법 발의
- '96.1.5.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 제정
- '96.4.6.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정

□ 희생자 및 유족 결정 현황

- 피해신고자 접수('96.5.11~7.4.), 사실조사 실시('96.7.5~12.17.)
- '98.2.17. 명예회복심의위원회 개최(사망자 및 유족 결정)

구분	총계		사망자		유족	
	접수	결정	접수	결정	접수	결정
합계	3,572명	2,451명	956명	934명	2,616명	1,517명
거창지역	1,520명	1,333명	557명	548명	963명	785명
산청·함양지역	2,052명	1,118명	399명	386명	1,653명	732명

